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4차 행정안전위원회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신고의무자 범위 확대 및 현행법령 정비〉

■ 백혜련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633호)

2025. 11.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나 아 정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백혜련의원 등 10인
2. 제안연월일 : 2025. 09. 03.
3. 회부연월일 : 2025. 09. 0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의료인 등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실종아동등임을 인지할 경우 경찰신고체계로 지체 없이 신고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로 실종아동등을 마주칠 수 있는 119구급대의 대원, 응급구조사 등은 신고의무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문제가 있음. 이에 실종아동등 신고의무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실종아동등을 보다 신속하게 발견·보호하고자 함.

또한, 현행법은 실종아동등의 신고의무자로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규정은 2017년 10월 삭제되었음. 이에 따라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근거 규정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로 현행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6호부터 제9호까지 신설 등).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실종아동등 신고의무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119구급대원, 응급구조사, 청소년시설 및 청소년단체 종사자, 학원 운영자·강사·직원 등을 추가하고,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근거 법령을 현행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4호 및 제6호부터 제9호까지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6조(신고의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실종아동등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경찰청장이 구축하여 운영하는 신고체계(이하 “경찰신고체계”라 한다)로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신고의무 등) ① ----- ----- ----- ----- ----- ----- -----.
1. 보호시설의 장 또는 그 종사자	1. ~ 3. (현행과 같음)
2. 「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3. 「청소년 보호법」 제35조 따른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장 또는 그 종사자	
4.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
5.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5.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의장 또는 의료인 <신설> <신설> <신설> <신설> 6.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등을 보호·감독하는 사람 ② ~ ⑥ (생략)	6.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119구급대의 대원 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 8.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9.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직원 10. (현행 제6호와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먼저, ‘신고의무자’ 범위 확대와 관련하여,

실종아동등 발생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서는 신속한 신고의 중요성이 강조됨. 실종아동등이 발생하면 경찰청장이 구축·운영하는

경찰신고체계(이하, '경찰신고체계'라 함)로의 신고접수를 시작으로¹⁾, 실종아동전문기관·경찰청·지방자치단체·보호시설 등으로 구축된 협력체계 및 정보연계시스템²⁾을 통해 수색·수사, 위치정보 추적, 유전자검사 등의 조치가 이루어짐.

현행 실종아동법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실종아동등임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경찰신고체계로 지체 없이 신고할 의무³⁾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러한 신고의무가 부여된 직종으로는 보호시설의 장 또는 그 종사자, 아동복지전담공무원 등이 있으며, 신고의무 위반 시에는 이들에게

1)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신고의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실종아동등임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경찰청장이 구축하여 운영하는 신고체계(이하 "경찰신고체계"라 한다)로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1. 보호시설의 장 또는 그 종사자
2. 「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3. 「청소년 보호법」 제35조 따른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장 또는 그 종사자
4.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5.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
6.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등을 보호·감독하는 사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계 법률에 따라 아동등을 보호조치할 때에는 아동등의 신상을 기록한 신고접수서를 작성하여 경찰신고체계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정보연계시스템 등의 구축·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실종아동등을 신속하게 발견하기 위하여 실종아동등의 신상정보를 작성, 취득, 저장, 송신·수신하는 데 이용할 수 있는 전문기관·경찰청·지방자치단체·보호시설 등과의 협력체계 및 정보네트워크(이하 "정보연계시스템"이라 한다)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 ⑥ (생략)

3)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신고의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실종아동등임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경찰청장이 구축하여 운영하는 신고체계(이하 "경찰신고체계"라 한다)로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1. 보호시설의 장 또는 그 종사자
2. 「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3. 「청소년 보호법」 제35조 따른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장 또는 그 종사자
4.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5.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
6.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등을 보호·감독하는 사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계 법률에 따라 아동등을 보호조치할 때에는 아동등의 신상을 기록한 신고접수서를 작성하여 경찰신고체계로 제출하여야 한다.

과태료가 부과됨⁴⁾.

개정안은 이 신고의무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119구급대원, 응급구조사, 청소년시설 및 청소년단체 종사자, 학원 운영자·강사·직원 등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이들 직군은 업무 특성상 실종아동등과 직접 접촉하거나 실종 징후를 조기에 감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 신고의무 부과가 실종아동등의 신속한 발견과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제2항은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의료인, 응급구조사, 119구급대원, 보육교직원, 교직원, 학원 운영자·강사·직원 등 21개 직업군을 규정하고 있으며,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은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로 의료인,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119구급대원, 응급구조사 등 15개 직업군을 규정하고 있는바⁵⁾,

실종아동등 신고의무자로 119 구급대원, 응급구조사, 학원 운영자·강사·직원 등을 추가하는 것은 이들의 신고가 실종 발생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전반적인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다만, 개정안은 실종아동등 신고의무자로 「청소년 기본법」 제3조

4)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해당 법률의 구체적 내용은 동 보고서 참고자료 참조

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과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 및 종사자를 추가하고 있음. 그런데 ‘청소년시설’은 「청소년복지지원법」상 ‘청소년복지시설’을 포함하며, 이러한 시설은 현행법 제6조 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보호시설’ 범주에 이미 포섭되므로, 동일 기관이 다시 규정되는 중복 소지가 있음.⁶⁾

다음으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근거 규정 정비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실종아동등의 신고 의무자의 하나로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규정하고 있는데, 동 조항은 이미 삭제(2017.10.24.)되었고, 현재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규정되어 있음.⁷⁾⁸⁾

6)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보호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인가·신고 등이 없이 아동등을 보호하는 시설로서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시설을 말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은 같은 조 제1호의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아동복지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등 35개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복지에 관한 사업이나 그 밖의 복지사업 및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로 구체적으로는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학대피해아동쉼터 등이 있음.

7)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사회복지전담공무원) ①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시·도, 시·군·구, 읍·면·동 또는 사회보장사무 전담기구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②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하며, 그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사회보장급여에 관한 업무 중 취약계층에 대한 상담과 지도, 생활실태의 조사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적 업무를 담당한다.

④ 국가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3조에 따라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8) <「사회복지사업법」內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규정 삭제 경과>

- '92년~'14년: 「사회복지사업법」 규정(제14조)

- '14년: 「사회보장급여법」 제정

- '14년~17년: 「사회복지사업법」(제14조) 및 「사회보장급여법」(제43조) 중복 규정

- '17년: 「사회복지사업법」 규정 삭제

개정안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근거 법률의 변경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봄.

참고로 개정안에 대해 경찰청은 119구급대원, 응급구조사, 청소년 시설 종사자, 학원 종사자 등을 신고의무자로 추가하여 신고 사각 지대를 해소하고 실종아동등의 조기 발견을 용이하게 하려는 취지에 동의하며, 2017년 삭제된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를 현행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로 변경하여 법률 간 정합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개정안을 수용하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44

[참고자료]: 1. 신고의무자 유사입법례(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2.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3. 「의료법」 제2조제1항의 의료인 및 같은 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의 장
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의 의료기사
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응급구조사
6. 「소방기본법」 제34조에 따른 구급대의 대원
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8.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9. 「유아교육법」 제20조에 따른 교직원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10.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직원,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등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
1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직원
1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3.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1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5.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7.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 및 「아동복지법」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8.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9.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6호의 청소년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조 제8호의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20.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5호의 장기요양요원

「노인복지법」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그 직무상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의료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2. 제27조의2에 따른 방문요양과 돌봄이나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 종사자,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7조에 따른 노인복지상담원
3.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인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5.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를 위한 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7.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8.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9.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1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의료기사
13.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요양직 직원
14. 「지역보건법」 제2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
15.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 자료: 보건복지부